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업무별 체크리스트

[고양시 주택과]

목차

-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 체크리스트
- 2. 동별대표자의 선거관리 체크리스트
- 3.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개최 등 체크리스트
- 4. 회계감사 및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수립 등 체크리스트
- 5. 관리비 및 사용료 집행 등 체크리스트
- 6. 관리비,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등 체크리스트
- 7. 주택관리업자 선정 체크리스트(입찰)
- 8. 주택관리업자 선정 체크리스트(수의계약)
- 9.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체크리스트(입찰)
- 10.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체크리스트(수의계약)
- 11. 장기수선계획 등 체크리스트
- 12. 설계도서의 보관 등 체크리스트
- 13. 안전관리계획 등 체크리스트
- 14. 하자보수 등 체크리스트
- 15.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등 체크리스트
- 16.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등 체크리스트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 체크리스트

| | 확인할 사항 | 확인(∨) |
|-----------------|--|-------------|
| ▶ 결격 및 | 자격상실 등 확인(법 제15조 및 영 제16조) | |
| 1. 동별대표 | E자 또는 그 후보자 | 해당□ 해당무□ |
| 2. 제1호에 |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해당□ 해당무□ |
| 3. 미성년지 | h,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해당□ 해당무□ |
| 4. 동별대표 | E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 | 해당□ 해당무□ |
| | E자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임기중에 있는 사람 | 해당□ 해당무□ |
| | 위원을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 임기 중에 있는 사람 | 해당□ 해당무□ |
| ▶ 위원위력 | F 및 구성(준칙 제34조) | |
| 1. 입주자등 공개모집 | 등 중 희망하는 자를 선거관리위원장이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입 공고 | 예□ 아니오□ |
| | l 공고문은 신청자 접수 7일 전에 공동주택의 인터넷 l와 게시판에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공고 | 홈페이지□ 게시판□ |
| 2-1. 신청 | 자 접수기간 및 장소 | 예□ 아니오□ |
| - | 관리위원 신청 자격 | 예□ 아니오□ |
| | 인원 초과 시 공개 추첨한다는 내용 추첨 일시, 장소 포함) | 예□ 아니오□ |
| ▶ 각 호의 | 구분에 따른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영 제15조) | |
| 선거관리위 | 원회 위원장은 호선하였는가? | 예□ 아니오□ |
| 1. 500세대 | 이상인 공동주택: 5명 이상 9명 이하 | 해당□ 구성원: ○명 |
| 2. 500세대 | 미만인 공동주택: 3명 이상 9명 이하 | 해당□ 구성원: ○명 |
| ▶ 선거관리 | J위원회 회의 등 업무(준칙 제37조) | |
| |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안건 및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통지하였는가? | 예□ 아니오□ |
| 회의 개최 전 | 1. 위원에게 통지하였는가? (서면 또는 수신확인 가능한 전자적방법) | 예□ 아니오□ |
| | 2.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였는가? | 예□ 아니오□ |
| | 관리주체는 회의 개최내용을 지체없이 공개하였는가 ? | 예□ 아니오□ |
| | 1. 홈페이지 | 예□ 아니오□ |
| | 2. 게시판 | 예□ 아니오□ |

| 회의록 작성 및 | 1.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록(의결사항 및 발언내용, 안건별 표결내용 등)을 명확히 기록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
| | 2. 구성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사를 결정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 | 3. 회의록에 참석한 선거관리 위원의 서명 을 받았는가? | 예□ | 아니오□ |
| | 4. 회의록을 관리주체에게 보관·관리하도록 통보 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 공개 | 5.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회의결과 | | |
| | 5-1.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 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 | 5-2. 게시판에 지체 없이 공개 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 ▶ 운영경법 | l(준칙 제38조) | | |
| | 리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연간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여 나 호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 | 예 🗌 | 아니오□ |
| 1. 회의 출 | · | 예□ | 아니오□ |
| | 표 업무 수당 : 1회만원(1회 최대 10만원이내) 의 안건에 대한 투표·개표 완료시까지를 1회로 본다. | 예□ | 아니오□ |
| 3. 투표·개 | 표 참관인 수당 : 1회만원(1회 최대 5만원 이내) | 예□ | 아니오□ |
| 4. 전자투표 | 돈 시 소요되는 비용 | 예□ | 아니오□ |
| 5. 선거홍도 | 보물 인쇄비 | 예□ | 아니오□ |
| 6. 「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 | 예□ | 아니오□ |
| 7. 회의 및 | 투·개표에 소요되는 식대와 간식 | 예□ | 아니오□ |
| 8. 후보자 | 자격 확인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 예□ | 아니오□ |
| 나. 상기 기 | ·목 제7호 및 제8호의 비용에 대한 절차 등 이행 여부 | | |
| • | 적, 참석자를 명기한 적격지출증빙 자료를 관리주체에 제출 지 여부 | 예□ | 아니오□ |
| 사용내역 | 체가 위 가항의 비용에 대한 수당, 그 밖의 소요되는 비용의 부을 별도의 장부(증빙자료 포함)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관리비 부과 배부 시 기재 또는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에게 알렸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2. 동별 대표자의 선거 관리 체크리스트

| 확인할 사항 | 확인[∨] |
|---|---------|
|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법 제14조 및 영 제11조) | |
|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 주 하고 있을 것 | 예□ 아니오□ |
| 2.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 예□ 아니오□ |
| 3. 4명 이상 으로 구성 | 예□ 아니오□ |
| 4. 보통선거 | 예□ 아니오□ |
| 5. 평등선거 | 예□ 아니오□ |
| 6. 직접선거 | 예□ 아니오□ |
| 7. 비밀선거 | 예□ 아니오□ |
| ▶ 선출공고문 공고(준칙 제22조) | |
| 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대표자 선출공고문 작성·공고 | 예□ 아니오□ |
|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 예□ 아니오□ |
| 2. 선거기간 | 예□ 아니오□ |
| 3. 투표 장소·방법 | 예□ 아니오□ |
| 4. 후보등록기간 | 예□ 아니오□ |
| 5. 후보등록 장소 | 예□ 아니오□ |
| 6. 후보등록서류(준칙 제22조제1항제5호 가목~자목) | 예□ 아니오□ |
| 6-1.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 (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 예□ 아니오□ |
| 6-2.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위임 동의서 각 1부(부동의시 개인제출) | 예□ 아니오□ |
| 6-3.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 (관리주체 발급) 1부 | 예□ 아니오□ |
| 6-4. 등기사항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예□ 아니오□ |
| 6-5.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예□ 아니오□ |
| 6-6. 가족관계증명서 (소유자 또는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 예□ 아니오□ |
| 6-7. 선거홍보물 사진, 약력 (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 예□ 아니오□ |
| 6-8.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소유자 또는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 예□ 아니오□ |
| 6-9. 임대차계약의 계약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용자에 한함) | 예□ 아니오□ |
| 7. 후보등록자격 | 예□ 아니오□ |
|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 예□ 아니오□ |

| ▶ 결격 및 자격상실 사유 등 확인(법 제14조 및 영 제11조) | |
|--|----------|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해당□ 해당무□ |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해당□ 해당무□ |
| 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해당□ 해당무□ |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해당□ 해당무□ |
| 5.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해당□ 해당무□ |
|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해당□ 해당무□ |
| 7.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 나 직계존비속 | 해당□ 해당무□ |
|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 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해당□ 해당무□ |
|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 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해당□ 해당무□ |
| 10.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 해당□ 해당무□ |
| 11.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위 제10호에 해당하여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사람 | 해당□ 해당무□ |
| ▶ 범죄경력 조회 등(법 제16조 및 영 제17조) | |
|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경찰관서의장 등)에게 확인하였는가? | 예□ 아니오□ |
| 2.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동의서 첨부)하였는가? | 예□ 아니오□ |
| ▶ 동별 대표자의 선출(영 제11조) | |
|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름 | 예□ 아니오□ |
|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 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 예□ 아니오□ |
|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 예□ 아니오□ |

|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법 제17조 및 영 제18조) | | |
|---|-----|--------|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이수 여부 | 예□ | 아니오□ |
| 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서 수강비용 부담 여부 | 예□ | 아니오□ |
|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영 제12조) | | |
| 1. 회장 1명 | 예□ | 아니오□ |
| 2. 감사 2명 이상 | 예□(| 명)아니오□ |
| 3. 이사 1명 이상 | 예□(| 명)아니오□ |
| Ⅰ. 회장 선출방법 | | |
| 1.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 예□ | 아니오□ |
| 2.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 예□ | 아니오□ |
| 3.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 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 예□ | 아니오□ |
| 4.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 예□ | 아니오□ |
| 1) 후보자가 없거나 위 제1항~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 예□ | 아니오□ |
| 2) 위 제1항~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 주택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 예□ | 아니오□ |
| Ⅱ. 감사 선출방법 | | |
| 1.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 예□ | 아니오□ |
|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 | 예□ | 아니오□ |
| 3.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후보자별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 예□ | 아니오□ |
| 4.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 예□ | 아니오□ |
| 1) 후보자가 없거나 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 예□ | 아니오□ |
| 2) 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 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 예□ | 아니오□ |
| Ⅲ. 이사 선출방법 | | |
|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 예□ | 아니오□ |
| 2.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 예□ | 아니오□ |

|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등의 신고(법 제19조) | | |
|---|----|------|
| 제정(개정)되거나 구성·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 구청장에게 제출 | 예□ | 아니오□ |
| 1.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 예□ | 아니오□ |
|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 예□ | 아니오□ |
| ▶ 겸임금지(준칙 제31조) | | |
|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 상호간 겸직 여부 | 예□ | 아니오□ |
| 2.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제42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공동체활성화 단체 임원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의 임원인지 여부 | 예□ | 아니오□ |

3.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개최 등 체크리스트

| 확인할 사항 | 확인(∨) |
|---|------------|
| ▶ 회의개최(영 제14조 및 준칙 제23조) | |
| 1.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예□ 아니오□ |
| 2.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며, | 예□ 아니오□ |
| 2-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1 이상이 청구하는 때 | 예□ 아니오□ |
| 2-2. 입주자등의 10분의1 이상이 요청하는 때 | 예□ 아니오□ |
| 2-3. 전체 입주자의 10분의1 이상이 요청하는 때(영 제14조제2항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 | 예□ 아니오□ |
| 3.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 (이사 중 연장자)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 대행 | 예□ 아니오□ |
| 4.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 정기□ 임시□ |
| ▶ 회의소집 절차(준칙 제25조) | |
| 1. 회장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 예□ 아니오□ |
| 1-1. 일시 | 일시: |
| 1-2. 장소 | 장소: |
| 1-3. 안건 | 안건: |
| 1-4. 입주자등의 방청방법 | 방청방법: |
| 1-5.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이메일 등)으로 통지 | 서면□ 전자적방법□ |
| 1-6. 동별 대표자에게 통지 | 예□ 아니오□ |
| 1-7. 관리주체에게 통지 | 예□ 아니오□ |
| 2. 관리주체는 지체없이 | 예□ 아니오□ |
| 2-1.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 예□ 아니오□ |
| 2-2. 게시판 공개 | 예□ 아니오□ |
|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법 제14조 및 준칙 제30조 | |
| 1. 의결사항 및 발언내용 기록 | 예□ 아니오□ |
| 1-1.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 대리가 불가한 바, 의결권 대리 여부 | 예□ 아니오□ |
| 2. 안건별 표결내용(찬성자, 반대자, 기권자 성명) 기록 | 예□ 아니오□ |
| 3.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서명을 모두 받았는가? | 예□ 아니오□ |
| 4. 관리주체에게 통보·보관하게 하였는가? | 예□ 아니오□ |

| 5. 관리주체는 회의결과 지체 없이 입주자등에게 공개 | | |
|--|-------|-------------|
| ※ 2022. 12. 11.시행: 법 제14조 제9항 신설 | 예□ | 아니오□ |
| 1. 300세대이상 : 회의록 공개를 법률로 의무화 | 71 □ | リリエロ |
| 2. 300세대 미만 : <u>회의록</u> 규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i>공</i> 개 | | |
| 5-1 : 인터넷 홈페이지 | 예□ | 아니오□ |
| 5-2 : 게시판 | 예□ | 아니오□ |
| 6. 관리주체는 회의록을 보관(5년)하여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 | 예□ | 아니오□ |
| 청구, 복사 요구 시 응하였는가? | V1 □ | <u> ЧТП</u> |
|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방법(준칙 제28조) | | |
| 1. 동별 대표자는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 예□ | 아니오□ |
|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예□ | 아니오□ |
| ▶ 재심의 요청 등[준칙 제29조] | | |
| 1.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 여부 | 예□ | 아니오□ |
| 2. 재심의 요청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여부 | 예□ | 아니오□ |
| 3. 재심의 요청 제출자 | | |
| 3-1. 10인 이상 입주자 등 | 예□ | 아니오□ |
| 3-2. 관리사무소장 | 예□ | 아니오□ |
| 3-3. 감사 | 예□ | 아니오□ |
| 4. 재심의 요청된 안건 즉시 효력 정지 여부 | 예□ | 아니오□ |
| 5. 재심의 요청서에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작성되었는가? | | |
| 5-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 예□ | 아니오□ |
| 5-2.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 예□ | 아니오□ |
| 5-3. 재심의 제안내용 | 예□ | 아니오□ |
| 6.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 예□ | 아니오□ |
| 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 의결 하였는가? | " 🗀 | -1 1—□ |
| 7. 그 결과를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 ▶ 운영경비(준칙 제32조) | | |
|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를 연간만원으로 예산편성하고 | 예□ | 아니오□ |
|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 1. 회의 출석수당 : 1회당 만원(1회당 최대 10만원 이내로 하되, | | |
| 월 20만원 초과불가) | 예□ | 아니오□ |
| 2. 회장 직책수당 : 매월만원 | 예□ | 아니오□ |
| 3. 감사 직책수당 : 매월 1인당만원 | 예□ | 아니오□ |
| 4. 공동체 활성화 이사 직책수당 : 매월만원 | 예□ | 아니오□ |
| 5.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및 윤리교육비 | 예□ | 아니오□ |

| 6. 제58조에 따른 동별 대표자 직무교육 및 공동체 활성화 교육비 | 예□ | 아니오□ |
|---|----|------|
| 7. 제73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보증보험 가입비용 | 예□ | 아니오□ |
| 8. 회의 시 식대, 다과 또는 간식 | 예□ | 아니오□ |
| 9. 회의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 교통비 | 예□ | 아니오□ |
| 나. 상기 제5호~제9호까지 각 목의 비용에 대한 절차 등 이행 여부 | 예□ | 아니오□ |
| 사용목적, 참석자를 명기한 정산서와 적격지출증빙 자료가 첨부된 정산서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였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 2. 관리주체가 위 가항의 비용에 대한 매월 직책수당과 회의출석수당의 지급내역, 그 밖의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의 장부(증빙자료 포함)로 작성 하여 보관하고 관리비 부과명세서 배부 시 기재 또는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에게 알렸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4. 회계감사 및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수립 등 체크리스트

| 확인할 사항 | 확인(∨) |
|---|---------|
| ▶ 회계감사(법 제26조 및 영 제27조) | |
| 1.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 | 예□ 아니오□ |
| ※ 2024. 1. 1. 시행 제외대상: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 | |
| 1. 서면동의서에 사유를 입주자등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재여부 | 예□ 아니오□ |
| 2. 서면동의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여부 | 예□ 아니오□ |
| 2.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 예□ 아니오□ |
| ※ 2024. 1. 1. 시행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 2. 제외대상 :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 | |
| 2-1. 서면동의서에 사유를 입주자등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재여부 | 예□ 아니오□ |
| 2-2. 서면동의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여부 | 예□ 아니오□ |
| 2-1. 입주자등의 10분의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시(<mark>2024.1.1.삭제</mark>) | 예□ 아니오□ |
| 2-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 시(<u>2024.1.1.삭제</u>) | 예□ 아니오□ |
| 3.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회계감사 받았는가? | 예□ 아니오□ |
| 4.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을 선정하였는가? | 예□ 아니오□ |
| 5. 관리주체는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 예□ 아니오□ |
| 5-1.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였는가? | 예□ 아니오□ |
| 5-2.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는가? | 예□ 아니오□ |
| 5-3.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였는가? | 예□ 아니오□ |
| 6.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에서 보고한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을 하였는가? | 예□ 아니오□ |
| ▶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수립 등(영 제26조 및 준칙 제71조) | |
| 1.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 (변경승인 포함)받아야 함 | 예□ 아니오□ |
| 2. 승인(변경승인 포함) 받은 예산서 지체 없이 공개 | |
| 2-1. 인터넷 홈페이지 | 예□ 아니오□ |
| 2-2. 게시판 | 예□ 아니오□ |

| 3.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작성 | 예□ 아니오□ |
|--|------------|
| 3-1.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 예□ 아니오□ |
| 3-2.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 | 홈페이지□ 게시판□ |
| 3-3. 또는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 | 개별통지□ |

5. 관리비 및 사용료 집행 등 체크리스트

| 확인할 사항 | 확인(∨) |
|--|---------|
| ▶ 관리비예치금(준칙 제60조) | |
|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관리비예치금 징수할 경우 | |
| 1.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관리비예치금 반환여부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 사용료 등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정산 후 잔액 반환가능) | 예□ 아니오□ |
| 2. 관리비예치금을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 여부 | 예□ 아니오□ |
| ▶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집행(준칙 제61조) | |
|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 집행여부 | 예□ 아니오□ |
| 2. 전기·수도·가스 사용료, 지역난방 방식인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등을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 납부 여부 | 예□ 아니오□ |
| ▶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준칙 제63조) | |
| ① 잡수입을 전체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공평한 이익을 위하여 사용여부 및 관리비 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여부 | 예□ 아니오□ |
| ② 다음 각 호의 비용(용도)을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비 및 사용료 등 항목 으로 사용여부 | 예□ 아니오□ |
| 1. 공동체 활성화 단체 지원비용 : 연간만원 | 예□ 아니오□ |
| 2. 주민자치 활동비용(자율방범대 운영, 경로잔치 등) : 연간만원 | 예□ 아니오□ |
| 3. 투표 참여 촉진 비용 : 연간만원 | 예□ 아니오□ |
| 4.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및 제55조의5제5항에 따른 자치조직 운영비 (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 : 연간만원 | 예□ 아니오□ |
| 5. 전기검침 업무수행자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자의 노무인력지원 비용 (단, 용역업체 소속직원에게 용역비와 별도로 지급시 연말정산시 해당 소득을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직영인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매 월 원천징수하여야 함): 연간만원 | 예□ 아니오□ |
| 6. 소송비용(단, 전체 입주자등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함): 연간만원 | 예□ 아니오□ |
| 7. 커뮤니티(주민공동시설 등)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연간만원 | 예□ 아니오□ |
| 8. 관리비 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한하여 발생 건당 100만원 미만의 소액지출) | 예□ 아니오□ |
| 9.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문 중 입주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자문비 : 연간만원 | 예□ 아니오□ |

| 10. 수익사업에 따른 법인세 등 세금에 소요되는 비용 | 예□ | 아니오□ |
|---|----|------|
| 1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입주자등) 수당. (다만, 선정된 평가위원이 동별대표자일 경우 회의출석수당과 중복지급 할 수 없음) | 예□ | 아니오□ |
| 12.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경우 : 연간만원 | 예□ | 아니오□ |
| ③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자문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자문비, 공용부분의 하자 조사비용(하자보수청구,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하자소송)과 이에 따른 소송 비용으로 지출 가능(다만,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불가)】 | 예□ | 아니오□ |
|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 예□ | 아니오□ |
|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 예□ | 아니오□ |
|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 예□ | 아니오□ |
| ④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당해 회계 연도에 잡수입 예산금액의 40% 이내에서(다만, 세대당 연간만원 초과불가),위 제②항 각 호의 용도로 편성 여부 | 예□ | 아니오□ |
|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 예□ | 아니오□ |
| 2.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 예□ | 아니오□ |
|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 예□ | 아니오□ |
| 4. 단지 내 시설의 이용 등으로 발생한 수입(주차장, 승강기, 주민공동시설 등) | 예□ | 아니오□ |
| 5. 검침수입 | 예□ | 아니오□ |
| 6.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 예□ | 아니오□ |
| (5) 위 제④항 각 호에 따른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 중 위 제②항 각 호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제41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 기간 중 관리비절감을 위해 매월주택공급면적에 따라 공용 관리비에서 차감 여부 (다만, 관리비 차감 시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 처리하지 않고 관리비로 발생시킨후 잡수입에서 차감함) | 예□ | 아니오□ |
| ⑥ 예비비 집행 시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은 받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 ① 잡수입에 대하여 1년 단위로 수입 및 지출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 ⑦-1.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을 시 변경승인 여부 | 예□ | 아니오□ |

| ⑧ 잡수입의 발생 및 지출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한 적립금액 등은 매월 | 예□ | 아니오□ |
|---|----|------|
| ®-1.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예□ | 아니오□ |
| ®-2. 게시판 게시 | 예□ | 아니오□ |
| ⑧-3. 관리비부과명세서 배부 시 기재 또는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에게 알렸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 ▶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준칙 제64조) | | |
| 1.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을 「별표 4」에 따라 산정 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 2. 관리비가 과다 징수된 경우 과다징수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고지서 배부 시 표기하고,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관리비에서 차감여부 | 예□ | 아니오□ |
| ▶ 사용료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준칙 제65조) | | |
| 1.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을 별표5에 따라 산정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 2.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 등은 별표 6」에 따라 산정하였고, 영 제23조제4항 및 제 5항에 따른 이용료 등은 별표 7」에 따라 산정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 3.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잉여금 발생 시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 부과명세서 배부시 표기하고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여부 | 예□ | 아니오□ |
| ▶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준칙 제69조) | | |
| 1. 관리비등의 납부고지서를 동·호수 및 관리비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 2. 관리비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적은 없는가? | 예□ | 아니오□ |
| 3.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전유부분 사용료부터 먼저 납부토록 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 ▶ 관리비 등의 연체료(준칙 제70조) | | |
| 1. 관리비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미납한 관리비에 관리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금을 부과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6. 관리비,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등 체크리스트

| 확인할 사항 | 확인(∨) |
|---|---------|
| ▶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법 제23조 및 영 제23조) | |
| 관리비 등(<mark>관리비, <mark>잡수입, 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mark>)을 부과한 관리주체는 그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mark> | 예□ 아니오□ |
| 1. 인터넷 홈페이지 | 예□ 아니오□ |
| 2. 동별 게시판 | 예□ 아니오□ |
| 3.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예□ 아니오□ |
| ▶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등(법제27조, 영제28조 및 준칙제52조) | |
| 1. 괸리주체는 괸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 | 예□ 아니오□ |
| ※ 2022. 12. 11. 시행 | |
| 1.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장부 및 증 빙서류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예□ 아니오□ |
| 1-1.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 예□ 아니오□ |
| 1-2. 주택관리업자 및 시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 :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 예□ 아니오□ |
| 2.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규약상 보존기한 내 보관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예□ 아니오□ |
| 2-1. 관리규약 및 제규정 | 예□ 아니오□ |
| 2-2. 장기수선계획서 | 예□ 아니오□ |
| 2-3. 안전관리계획서 | 예□ 아니오□ |
| 2-4. 사업주체로부터 인계받은 설계도서 및 시설 장비의 명세 | 예□ 아니오□ |
| 2-5.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 예□ 아니오□ |
| 2-6. 관리비·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의 부과·징수·사용· 보관 및 예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 예□ 아니오□ |
| 2-7.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 예□ 아니오□ |
| 2-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관련 자료 | 예□ 아니오□ |
| 2-9. 공사도면 및 준공도면 | 예□ 아니오□ |
| 2-10. 사업주체의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보수이력 | 예□ 아니오□ |
| 2-11.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 예□ 아니오□ |
| 2-12. 시설물의 교체 및 유지보수 등의 이력관리 관련 서류·도면 및 사진 | 예□ 아니오□ |
| 2-13.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잡수입 사용내역 | 예□ 아니오□ |
| 2-14. 입주자등의 제안(건의), 질의, 민원사항 처리 내역 | 예□ 아니오□ |

| 2-15.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서류 | 예□ 아니오□ |
|--|--|
| 2-16.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 예□ 아니오□ |
| 3. 입주자등이 위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 공개신청 시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공개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여부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개 여부 | 예□ 아니오□ |
| 3-1. 열람요청시 : 결정 통보 후 즉시(반출을 금함) | 예□ 아니오□ |
| 3-2. 복사요청시 : 복사수수료는 공개결정 통보 후 납부하며,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교부 | 예□ 아니오□ |
| 3-3. 방대한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관리업무에 현저한 지장 초래시 요청자와 협의한 후 정보공개 처리계획서 통지 | 예□ 아니오□ |
| 4. 위 제3-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 잡수입으로 처리여부 | 예□ 아니오□ |
| ▶ 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등(영 제28조) | |
|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
| 한다 1세트 러급 그 보러 설명을 | |
|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 홈페이지□ 개별통지□ |
| | 홈페이지□ 개별통지□ 예□ 아니오□ |
|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 |
|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1.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 예□ 아니오□ |
|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1.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2.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 예□ 아니오□ |
|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1.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2.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3. 관리비등의 부과명세 및 연체 내용 |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
|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1.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2.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3. 관리비등의 부과명세 및 연체 내용 4. 관리규약 |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
|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1.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2.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3. 관리비등의 부과명세 및 연체 내용 4. 관리규약 5. 장기수선계획 |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
|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1.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2.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3. 관리비등의 부과명세 및 연체 내용 4. 관리규약 5. 장기수선계획 6. 안전관리계획의 현황 | 예 다니오 다 에 다니오 다니오 다 에 다니오 다니오 다 에 다니오 다니오 다 |

7. 주택관리업자 선정 체크리스트(입찰)

| 확인할 사항 | 확인(∨) |
|---|-------------|
| ▶ 위탁관리(법 제7조),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법 제25조) | |
|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 단,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예외 | 전자입찰□ 기타□ |
| ※ 2023년부터는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만 가능 | |
| 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찰 및 낙찰의 방법 결정(지침 제4조 및 제7조) | |
| 1. 입찰공고 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여부 | 예□ 아니오□ |
| ※ 2022. 12. 11. 시행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 여부(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 예□ 아니오□ |
| 2.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 일반경쟁□ 제한경쟁□ |
| 3.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 적격□ 최저□ |
| 4. 적격심사제의 경우 표준평가표 또는 관리규약 평가표 | 표준□ 관리규약□ |
| Ⅱ. 제한경쟁입찰의 경우(별표 1) 하한 제한 | |
|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 |
| 영위하는 자 중에서 ① 사업실적 :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 제한 | ○○건 이상 |
| ② 기술능력 :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설비·성능·물품 등을 포함) 보유현황으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가능 | ○○ 보유 |
| ③ 자본금의 하한 | ○○원 이상 |
| ④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인가? | 예□ 아니오□ |
| 입 찰 | |
| ▶ 입찰공고 내용 확인(지침 제16조) | |
| 1. 관리대상(세대수, 동수, 총 주택공급면적 등) | 예□ 아니오□ |
| 2. 경비·청소 등의 직영운영 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 예□ 아니오□ |
| 3. 현장설명회 개최하는 경우 일시·장소 및 참가의무여부 | 예□ 아니오□ |
|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적격심사제의 경우 세부배점 간격이 제시된 평가배점표 포함) | 예□ 아니오□ |
| 5. 입찰서 등 제출 서류(제19조에 따른 제출서류에 한함)에 관한 사항 (제출서류의 목록, 서식, 제출방법, 마감시한 등) | 예□ 아니오□ |
| 6. 개찰의 일시·장소 | 예□ 아니오□ |

| 7.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제18조의 참가자격제한에 대한 사항에 한함) | 예□ 아니오□ |
|--|---|
| 8. 무효로 하는 입찰의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무효 이유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사항 | 예□ 아니오□ |
| 9. 입찰 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기준 등) | 예□ 아니오□ |
| 10.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등) | 예□ 아니오□ |
| 11.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 예□ 아니오□ |
| 12.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예□ 아니오□ |
| ▶ 입찰공고 방법 및 시기(지침 제14조 및 제15조) | |
| 1.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 | 예□ 아니오□ |
| 2. 긴급,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5일전(현장설명회 없는 경우에 한함)에 공고 | 긴급□ 재공고□ |
| 3.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는가? | 예□ 아니오□ |
| 4. 동별 게시판에 공고하였는가? | 예□ 아니오□ |
| 5.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였는가? | 예□ 아니오□ |
| ▶ 현장설명회(지침 제17조) | |
| ○ 현장설명회 개최여부 | 예□ 아니오□ |
| | |
| 1. 현장설명회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 개최 | 예□ 아니오□ |
| 1. 현장설명회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 개최 2.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에 | 예□ 아니오□ 예□ 아니오□ |
| 1. 현장설명회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 개최 | - |
| 1. 현장설명회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 개최 2.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에 입찰공고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며, 각 호 외의 사항 | - |
| 1. 현장설명회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 개최 2.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에 입찰공고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며, 각 호 외의 사항추가 제시 불가 | 예□ 아니오□ |
| 1. 현장설명회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 개최 2.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에 입찰공고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며, 각 호 외의 사항추가 제시 불가 1. 관리대상(세대수, 동수, 총 주택공급면적 등 현황) | 예□ 아니오□ |
| 1. 현장설명회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 개최 2.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에 입찰공고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며, 각 호 외의 사항 추가 제시 불가 1. 관리대상(세대수, 동수, 총 주택공급면적 등 현황) 2. 입찰공고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 |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
| 1. 현장설명회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 개최 2.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에 입찰공고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며, 각 호 외의 사항추가 제시 불가 1. 관리대상(세대수, 동수, 총 주택공급면적 등 현황) 2. 입찰공고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 3. 그 밖에 입찰에 관한 질의응답 등 필요한 사항 |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
| 1. 현장설명회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 개최 2.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에 입찰공고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며, 각 호 외의 사항추가 제시 불가 1. 관리대상(세대수, 동수, 총 주택공급면적 등 현황) 2. 입찰공고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 3. 그 밖에 입찰에 관한 질의응답 등 필요한 사항 ▶ 입찰서 제출(지침 제8조) ○ 전자입찰방식 :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그 밖의 입찰서의 구비서류와 제19조와 27조에 따른 서류는 |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
| 1. 현장설명회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 개최 2.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에 입찰공고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며, 각 호 외의 사항추가 제시 불가 1. 관리대상(세대수, 동수, 총 주택공급면적 등 현황) 2. 입찰공고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 3. 그 밖에 입찰에 관한 질의응답 등 필요한 사항 ▶ 입찰서 제출(지침 제8조) ○ 전자입찰방식 :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그 밖의 입찰서의 구비서류와 제19조와 27조에 따른 서류는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 ○ 비전자적입찰방식 :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서와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서류 제출 |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
| 1. 현장설명회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 개최 2.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에 입찰공고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며, 각 호 외의 사항추가 제시 불가 1. 관리대상(세대수, 동수, 총 주택공급면적 등 현황) 2. 입찰공고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 3. 그 밖에 입찰에 관한 질의응답 등 필요한 사항 ▶ 입찰서 제출(지침 제8조) ○ 전자입찰방식 :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그 밖의 입찰서의 구비서류와 제19조와 27조에 따른 서류는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 ○ 비전자적입찰방식 :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서와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서류 제출 ※ 2023년부터는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만 가능 |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이 아니오 이 아니오 이 아니오 이 아니오 이 아니오 이 이 아니오 |

| ▶ 참가자격(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의 제한(법제7조,영제5조 및 지침제18조) | |
|--|----------|
|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예□ 아니오□ |
|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 예□ 아니오□ |
| 3.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 예□ 아니오□ |
| 4. 입찰공고일 현재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 | 예□ 아니오□ |
| 5.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 대표회의(구성원 포함),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포함) 등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 | 예□ 아니오□ |
| 6.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이 임·직원으로 소속된 주택관리업자 | 예□ 아니오□ |
| 7.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예□ 아니오□ |
| 8. 입주자등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제한 요구 여부 | 예□ 아니오□ |
| 8-1. 입주자등의 요구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용여부 | 예□ 아니오□ |
| ▶ 입찰서 개찰(지침 제9조) | |
| 1. 입찰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장소에서 개찰 | 예□ 아니오□ |
| 2. 일정대로 진행되거나 개찰 일정 변경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업체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의 개찰 여부 | 예□ 아니오□ |
| ▶ 제출된 서류의 확인(지침 제19조) | |
| 입찰에 참가하는 주택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하여야 함 (비전자적인 방식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제1호, 제4호, 제5호는 원본 제출) | |
| 1. 입찰서 | 제출□ 미제출□ |
| 2.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 제출□ 미제출□ |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출□ 미제출□ |
|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 제출□ 미제출□ |
|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전자발급 포함 | 제출□ 미제출□ |
| 6.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그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 | 제출□ 미제출□ |
| 7. 적격심사제인 경우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 서류 | 제출□ 미제출□ |
| 8. 입찰보증금 | 제출□ 미제출□ |
| 9.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 제출□ 미제출□ |

| ▶ 입찰의 무효 확인(지침 별표3) | |
|---|-----------------|
|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확인□ 미확인□ |
| 2.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한 입찰에 현장설명회 불참자의 입찰 | 확인□ 미확인□ |
| 3. 입찰서 및 제출서류가 마감시한까지 정해진 입찰 장소에 미도착한 입찰 | 확인□ 미확인□ |
| 4.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정해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확인□ 미확인□ |
| 5. 입찰자 본인 또는 본인의 대리인이 아닌 자의 입찰 | 확인□ 미확인□ |
| 6.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확인□ 미확인□ |
| 7.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 확인□ 미확인□ |
|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 확인□ 미확인□ |
| 9. 입찰가격 산출 방법 및 기준 등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여 제출한 입찰 | 확인□ 미확인□ |
| 10. 입찰서의 기재내용 중 중요부분에 오기가 발견되어 개찰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확인한 입찰, 제출서류가 거짓이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 | 확인□ 미확인□ |
| 11.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 또는 각목에 해당하는 입찰 | 확인□ 미확인□ |
| 11-1. 입찰서의 입찰가격과 산출내역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 확인□ 미확인□ |
| 11-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합산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 확인□ 미확인□ |
| 12.별지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입찰가격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전자입찰방식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찰서 제출) | 확인□ 미확인□ |
| ▶ 입찰의 성립 확인(지침 제5조) | |
| 1. 일반경쟁입찰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 예□ 아니오□ |
| 2. 제한경쟁입찰 :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 |
| 2. 세월성영남철 · 3년 이상의 표표한 남철 | 예□ 아니오□ |
| 3. 무효로 하는 입찰은 있었는가? | 예□ 아니오□ 예□ 아니오□ |
| | |
| 3. 무효로 하는 입찰은 있었는가? | 예□ 아니오□ |
| 3. 무효로 하는 입찰은 있었는가? 4. 무효 시 입찰자에게 무효이유를 알렸는가? | 예□ 아니오□ |
| 3. 무효로 하는 입찰은 있었는가? 4. 무효 시 입찰자에게 무효이유를 알렸는가? 4-1. 유효입찰 수 부족 시 자동유찰로 재공고 | 예□ 아니오□ |
| 3. 무효로 하는 입찰은 있었는가? 4. 무효 시 입찰자에게 무효이유를 알렸는가? 4-1. 유효입찰 수 부족 시 자동유찰로 재공고 나 찰 | 예□ 아니오□ |

| ▶ 낙찰자 선정(지침 제10조) | | |
|---|-------------|------|
| 1.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찰자의 제출서류를 입찰서 개찰 후에 검토하고 제5조에 따른 입찰의 성립여부 판단 | 예□ | 아니오□ |
| 2.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찰이 성립된 경우 유효한 입찰 가운데 제7조 (낙찰의 방법)에 따라 낙찰자 선정 | 예□ (낙찰자: | 아니오□ |
| ▶ 적격심사제 운영(지침 제13조 및 별표4) | (12 1 | , |
| 1. 평가주체는 5인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평가위원을 추가할 수 있음)으로 구성되었는가? | 예□ | 아니오□ |
| 2. 평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 3.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로 선정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 4.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평가표 포함)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 ▶ 선정결과 공개(지침 제11조) | | |
| 1. 입주자대표회의는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리주체 에게 즉시 통 지 | 예□ | 아니오□ |
| 1-1. 입찰공고 내용 | 예□ | 아니오□ |
| 1-2. 주택관리업자의 상호·주소·대표자 및 연락처 | 예□ | 아니오□ |
| 1-3. 계약금액 | 예□ | 아니오□ |
| 1-4. 계약기간 | 예□ | 아니오□ |
| 1-5. 적격심사인 경우 그 평가결과 | 예□ | 아니오□ |
| 2. 관리주체는 낙찰자의 결정일의 다음날 18시까지 아래의 방법으로 위1에 대하여 공개 | 예□ | 아니오□ |
| 2-1. 인터넷 홈페이지 | 예□ | 아니오□ |
| 2-2. 동별 게시판 | 예□ | 아니오□ |
| 2-3.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예□ | 아니오□ |
| 계약 | | |
| ▶ 계약체결(법 제28조, 지침 제21조 및 제31조) | | |
| 1.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체결 | 예 🗆 | 아니오□ |
| 2.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하게 체결했는가? | 예□ | 아니오□ |
| 3. 계약보증금을 받았는가? | 예□ | 아니오□ |
| 4.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4대보험 가입증명서 수취 (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 예□ | 아니오□ |
| 5.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방법으로 공개 | 예□ | 아니오□ |
| 5-1. 인터넷 홈페이지 | 예□ | 아니오□ |
| 5-2. 동별 게시판 | 예□ | 아니오□ |

8. 주택관리업자 선정 체크리스트(수의계약)

| 확인할 사항 | 확인(∨) |
|---|----------|
| ▶ 위탁관리(법 제7조),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영 제5조 및 준칙 제48조) | |
|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 | |
| ※ 2022. 12. 11. 시행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 여부(계약상대자 선정, 계약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 예□ 아니오□ |
| ○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절차 및 방법 | |
| 1.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mark>○개월</mark> 전까지 | ○○개월 |
| 2.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여 | 예□ 아니오□ |
| 3. 각 호의 사항을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결내용을 통지 하여 | 예□ 아니오□ |
| 3-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의 명칭) | 예□ 아니오□ |
| 3-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 예□ 아니오□ |
| 3-3. 계약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업무 평가내용 (별지 10호 서식) | 예□ 아니오□ |
| 3-4. 재계약 기간 및 재계약 내용 | 예□ 아니오□ |
| 4.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관련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요청 | 예□ 아니오□ |
| 5.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견청취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에 | 예□ 아니오□ |
| 6.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mark>공개</mark> 하고 | 홈페이지 |
| 6-1. 위 3호 각 호의 내용 | 예□ 아니오□ |
| 6-2. 전체 입주자의 10분의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재계약부동의) 하면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할 수 없다는 내용 | 예□ 아니오□ |
| 6-3. 의견청취 기간 및 장소(관리사무소 제외) | 예□ 아니오□ |
| 6-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예□ 아니오□ |
| 7. 모든 세대에 1매씩 배부 하여 | 예□ 아니오□ |
| 7-1. 7일 이상 의견청취 를 한 후 | 예□ 아니오□ |
| 7-2.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 예□ 아니오□ |
| 7-3. 공동주택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mark>공개</mark> | 홈페이지 게시팬 |
| ○ 의견청취 결과 | |
| 1. 전체 입주자의 1/10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제기(재계약 부동의) 여부 ※ 재계약에 부동의한 때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 | 예□ 아니오□ |
| 2. 재계약 부동의가 없을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2/3이상이 찬성으로 재계약 의결 | 예□ 아니오□ |

| ▶ 선정결과 공개(지침 제11조) | |
|---|---------|
| 1. 입주자대표회의는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지 | 예□ 아니오□ |
| 1-1. 주택관리업자의 상호·주소·대표자 및 연락처 | 예□ 아니오□ |
| 1-2. 계약금액 | 예□ 아니오□ |
| 1-3. 계약기간 | 예□ 아니오□ |
| 1-4. 수의계약인 경우 그 사유 | 예□ 아니오□ |
| 2. 관리주체는 낙찰자의 결정일의 다음날 18시까지 아래의 방법으로 위1에 대하여 공개 | 예□ 아니오□ |
| 2-1. 인터넷 홈페이지 | 예□ 아니오□ |
| 2-2. 동별 게시판 | 예□ 아니오□ |
| 2-3.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예□ 아니오□ |
| ▶ 계약체결(법 제28조, 지침 제21조 및 제31조) | |
| 1.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체결 | 예□ 아니오□ |
| 2.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하게 체결했는가? | 예□ 아니오□ |
| 3. 계약보증금을 받았는가? | 예□ 아니오□ |
| 4.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4대보험 가입증명서 수취 (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 예□ 아니오□ |
| 5.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방법으로 공개 | 예□ 아니오□ |
| 5-1. 인터넷 홈페이지 | 예□ 아니오□ |
| | |

9.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체크리스트[입찰]

| 확인할 사항 | 확인(∨) |
|---|-------------|
|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법 제25조) | |
|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 단,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예외 ※ 2023년부터는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만 가능 | 전자입찰□ 기타□ |
| I.입주자대표회의는 입찰 및 낙찰의 방법 결정(지침 제4조 및 제7조)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최고낙찰제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 다만, 입주민투표(전자적 방법 포함)로 낙찰방법을 결정하고자 할 경 우에는 관리규약으로 대상 금액을 별도로 정해야 함. | |
| 1. 입찰공고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여부 | 예□ 아니오□ |
| 2. 입주민투표 여부 | 예□ 아니오□ |
| 3.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 일반□ 제한□ 지명□ |
| 4.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최고낙찰제 | 적격□ 최저□ 최고□ |
| 5. 적격심사제의 경우 표준평가표, 관리규약 평가표, 전자입찰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선택적으로 적용 | 표준□ 규약□ 전자□ |
| Ⅱ. 제한경쟁입찰의 경우(별표 1) 하한 제한 | |
|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 |
| ① 사업실적: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 제한 | ○○건 이상 |
| ② 기술능력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설비·성능·물품 등을 포함) 보유현황으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가능 | 예□ 아니오□ |
| 1) 공법 : | 예□ 아니오□ |
| 2) 설비 : | 예□ 아니오□ |
| 3) 성능 : | 예□ 아니오□ |
| 4) 물품 : | 예□ 아니오□ |
| ③ 자본금의 하한 | ○○원 이상 |
| ④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인가? | 예□ 아니오□ |
| Ⅲ. 지명경쟁입찰의 조건(별표 1) | |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공법·설비·성능·물품 등을 말함)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 달성 하기 곤란 | 예□ 아니오□ |
| 1. 특수한 기술 | 예□ 아니오□ |

| 1-1. 공법 : | 예□ 아니오□ |
|---|----------|
| 1-2. 설비 : | 예□ 아니오□ |
| 1-3. 성능 : | 예□ 아니오□ |
| 1-4. 물품 : | 예□ 아니오□ |
| 2. 입찰대상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지명한 후 선정 | 예□ 아니오□ |
| 3. 5인 이상 의 입찰대상자 지명 | 예□ 아니오□ |
| 4. 다만,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 모두 지명 | 예□ 아니오□ |
| 입 찰 | |
| ▶ 입찰공고 내용 확인(지침 제24조) | |
| 1. 사업 개요(사업내용·규모·면적 등) | 예□ 아니오□ |
| 2.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일시·장소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사항 | 예□ 아니오□ |
|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적격심사제의 경우 세부배점 간격이 제시된 평가배점표 포함) | 예□ 아니오□ |
| 4. 입찰서 등, 제출서류(제27조에 따른 제출서류에 한함)에 관한사항 (제출서류의 목록, 서식, 제출방법, 마감시한 등) | 예□ 아니오□ |
| 5. 개찰의 일시·장소 | 예□ 아니오□ |
| 6.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제26조의 참가자격제한에 대한 사항에 한함) | 예□ 아니오□ |
| 7. 무효로 하는 입찰의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무효 이유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사항 | 예□ 아니오□ |
| 8. 입찰 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기준 등) | 예□ 아니오□ |
|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등) | 예□ 아니오□ |
| 10.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 예□ 아니오□ |
| 1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예□ 아니오□ |
| ▶ 입찰공고 방법 및 시기(지침 제14조 및 제15조) | |
| 1.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 | 예□ 아니오□ |
| 2. 긴급,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5일전(현장설명회 없는 경우에 한함)에 공고 | 긴급□ 재공고□ |
| 3.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는가? | 예□ 아니오□ |
| 4. 동별 게시판에 공고하였는가? | 예□ 아니오□ |
| 5.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였는가? | 예□ 아니오□ |
| ▶ 현장설명회(지침 제25조) | |
| ○ 현장설명회 개최여부 | 예□ 아니오□ |

| 1. 현장설명회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 개최 | 예□ 아니오□ |
|---|---|
| 2.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에 입찰공고 | 예□ 아니오□ |
|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며, 각 호 외 사항 (제출서류 및 참가자격 제한 등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제시할 수 없음. | |
| 1. 다음 각 목의 현황 등 사업 여건 | 예□ 아니오□ |
| 1-1. 경비용역 : 경비초소 및 경비구역 현황 | 예□ 아니오□ |
| 1-2. 청소용역 : 청소범위 및 청소면적 현황 | 예□ 아니오□ |
| 1-3. 소독용역 : 소독범위 및 소독면적 현황 | 예□ 아니오□ |
| 1-4. 승강기유지관리 용역 및 공사 : 승강기 대수 및 시설현황 | 예□ 아니오□ |
| 1-5.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관리 용역 및 공사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대수 및 시설현황 | 예□ 아니오□ |
| 1-6. 각종 시설 및 보수공사 : 설계도서, 보수범위 및 보수방법 | 예□ 아니오□ |
| 1-7. 건축물 안전진단 : 설계도서 및 안전진단범위 | 예□ 아니오□ |
| 1-8. 그 밖의 용역 및 공사 :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현황 | 예□ 아니오□ |
| 2. 입찰공고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 | 예□ 아니오□ |
| | 예□ 아니오□ |
| 3. 그 밖에 입찰에 관한 질의응답 등 필요한 사항 | |
| 3. 그 밖에 입찰에 관한 철의응답 등 필요한 사항 • 입찰서 제출(지침 제8조) | |
| | 예□ 아니오□ |
| ▶ 입찰서 제출(지침 제8조) ○ 전자입찰방식 :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그 밖의 입찰서의 구비서류와 제19조와 27조에 따른 | |
| ▶ 입찰서 제출(지침 제8조) ○ 전자입찰방식 :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그 밖의 입찰서의 구비서류와 제19조와 27조에 따른 서류는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 ○ 비전자적입찰방식 :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서와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서류 제출 | 예□ 아니오□ |
| ▶ 입찰서 제출(지침 제8조) ○ 전자입찰방식 :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그 밖의 입찰서의 구비서류와 제19조와 27조에 따른 서류는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 ○ 비전자적입찰방식 :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서와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서류 제출 ※ 2023년부터는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만 가능함. | 예□ 아니오□ |
| ▶ 입찰서 제출(지침 제8조) ○ 전자입찰방식: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그 밖의 입찰서의 구비서류와 제19조와 27조에 따른 서류는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 ○ 비전자적입찰방식: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서와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서류 제출 ※ 2023년부터는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만 가능함. 1. 서류제출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17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함. |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
| ▶ 입찰서 제출(지침 제8조) ○ 전자입찰방식 :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그 밖의 입찰서의 구비서류와 제19조와 27조에 따른 서류는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 ○ 비전자적입찰방식 :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서와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서류 제출 ※ 2023년부터는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만 가능함. 1. 서류제출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17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함. 2.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불가 한바, 입찰서 교환·변경 여부 |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
| ▶ 입찰서 제출(지침 제8조) ○ 전자입찰방식 :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그 밖의 입찰서의 구비서류와 제19조와 27조에 따른 서류는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 ○ 비전자적입찰방식 :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서와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서류 제출 ※ 2023년부터는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만 가능함. 1. 서류제출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17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함. 2.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불가 한바, 입찰서 교환·변경 여부 3. 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후 개찰 |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
| ▶ 입찰서 제출(지침 제8조) ○ 전자입찰방식 :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그 밖의 입찰서의 구비서류와 제19조와 27조에 따른 서류는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 ○ 비전자적입찰방식 :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서와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서류 제출 ※ 2023년부터는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만 가능함. 1. 서류제출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17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함. 2.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불가 한바, 입찰서 교환·변경 여부 3. 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후 개찰 ▶ 참가자격의 제한(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확인(지침 제26조) 1.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자격 | 에 이 아니오 에 이 아니오 에 이 아니오 에 아니오 에 아니오 |
| ▶ 입찰서 제출(지침 제8조) ○ 전자입찰방식: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그 밖의 입찰서의 구비서류와 제19조와 27조에 따른 서류는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 ○ 비전자적입찰방식: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서와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서류 제출 ※ 2023년부터는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만 가능함. 1. 서류제출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17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함. 2.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불가 한바, 입찰서 교환·변경 여부 3. 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후 개찰 ▶ 참가자격의 제한(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확인(지침 제26조) 1.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 |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

| 5.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 | 예□ 아니오□ |
|---|----------|
| 6.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예□ 아니오□ |
| ▶ 입찰서 개찰(지침 제9조) | |
| 1. 입찰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장소에서 개찰 | 예□ 아니오□ |
| 2. 일정대로 진행되거나 개찰 일정 변경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업체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의 개찰 여부 | 예□ 아니오□ |
| ▶ 제출된 서류의 확인(지침 제27조 및 제31조) | |
|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주체에게 제출 (비전자전인 방식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제1호, 제4호 및 제5호는 원본 제출) | |
| 1. 입찰서 | 제출□ 미제출□ |
| 2.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 제출□ 미제출□ |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출□ 미제출□ |
|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 제출□ 미제출□ |
|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전자발급 포함) | 제출□ 미제출□ |
| 6.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그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 제출□ 미제출□ |
| 7. 적격심사제인 경우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 서류 | 제출□ 미제출□ |
| 8. 입찰보증금 | 제출□ 미제출□ |
| 9.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 제출□ 미제출□ |
| ▶ 입찰의 무효 확인(지침 별표3) | |
|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확인□ 미확인□ |
| 2.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한 입찰에 현장설명회 불참자의 입찰 | 확인□ 미확인□ |
| 3. 입찰서 및 제출서류가 마감시한까지 정해진 입찰 장소에 미도착한 입찰 | 확인□ 미확인□ |
| 4.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정해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확인□ 미확인□ |
| 5. 입찰자 본인 또는 본인의 대리인이 아닌 자의 입찰 | 확인□ 미확인□ |
| 6.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확인□ 미확인□ |
| 7.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 확인□ 미확인□ |
|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 확인□ 미확인□ |
| 9. 입찰가격 산출 방법 및 기준 등 입찰공고의 주용한 내용을 위반하여 제출한 입찰 | 확인□ 미확인□ |
| 10.입찰서의 기재내용 중 중요부분에 오기가 발견되어 개찰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확인한 입찰, 제출서류가 거짓이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 | 확인□ 미확인□ |

| 11.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 또는 각 목에 해당하는 입찰 | 확인□ 미확인□ |
|---|--|
| 11-1. 입찰서의 입찰가격과 산출내역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 확인□ 미확인□ |
| 11-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합산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 확인□ 미확인□ |
| 12.별지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입찰가격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전자입찰방식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찰서 제출) | 확인□ 미확인□ |
| 13.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종합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는 아니 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 확인□ 미확인□ |
| ▶ 입찰의 성립 확인(지침 제5조) | |
| 1. 일반경쟁입찰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 예□ 아니오□ |
| 2. 제한경쟁입찰 :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 예□ 아니오□ |
| 3. 지명경쟁입찰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 예□ 아니오□ |
| 4. 무효로 하는 입찰은 있었는가? | 예□ 아니오□ |
| 5. 무효 시 입찰자에게 무효이유를 알렸는가? | 예□ 아니오□ |
| 5-1. 유효 입찰수 부족 시 자동유찰로 재공고 | 예□ 아니오□ |
| 나 <u>찰</u> | |
| | |
| ▶ 낙찰의 방법(지침 제7조) | |
| ▶ 낙찰의 방법(지침 제7조) 1. 적격심사제 :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최고)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 결정하고, 최저(최고)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 예□ 아니오□ |
| 1. 적격심사제 :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최고)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 결정하고, 최저(최고)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 예□ 아니오□ |
| 1. 적격심사제 :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최고)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 결정하고, 최저(최고)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2. 최저(최고)낙찰제 : 최저(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 |
| 1. 적격심사제 :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최고)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 결정하고, 최저(최고)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2. 최저(최고)낙찰제 : 최저(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 |
| 1. 적격심사제 :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최고)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 결정하고, 최저(최고)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2. 최저(최고)낙찰제 : 최저(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 낙찰자 선정(지침 제10조)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입찰자의 제출서류를 입찰서 개찰 후에 검토하고 제5조에 따른 입찰의 성립여부 판단 2.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입찰이 성립된 경우 유효한 입찰 |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
| 1. 적격심사제 :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최고)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 결정하고, 최저(최고)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2. 최저(최고)낙찰제 : 최저(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 낙찰자 선정(지침 제10조)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입찰자의 제출서류를 입찰서 개찰 후에 검토하고 제5조에 따른 입찰의 성립여부 판단 | 예□ 아니오□ |
| 1. 적격심사제 :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최고)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 결정하고, 최저(최고)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2. 최저(최고)낙찰제 : 최저(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 낙찰자 선정(지침 제10조)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입찰자의 제출서류를 입찰서 개찰 후에 검토하고 제5조에 따른 입찰의 성립여부 판단 2.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입찰이 성립된 경우 유효한 입찰 |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
| 1. 적격심사제 :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최고)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 결정하고, 최저(최고)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2. 최저(최고)낙찰제 : 최저(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 낙찰자 선정(지침 제10조)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입찰자의 제출서류를 입찰서 개찰 후에 검토하고 제5조에 따른 입찰의 성립여부 판단 2.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입찰이 성립된 경우 유효한 입찰 가운데 제7조(낙찰의 방법)에 따라 낙찰자 선정 |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
| 1. 적격심사제 :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최고)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 결정하고, 최저(최고)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2. 최저(최고)낙찰제 : 최저(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 낙찰자 선정(지침 제10조)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입찰자의 제출서류를 입찰서 개찰 후에 검토하고 제5조에 따른 입찰의 성립여부 판단 2.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입찰이 성립된 경우 유효한 입찰가운데 제7조(낙찰의 방법)에 따라 낙찰자 선정 ▶ 적격심사제 운영(지침 제13조 및 별표 5,6) 1. 평가주체는 5인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입주자대표회의가 |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낙찰자:) |
| 1. 적격심사제 :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최고)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 결정하고, 최저(최고)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2. 최저(최고)낙찰제 : 최저(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 낙찰자 선정(지침 제10조)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입찰자의 제출서류를 입찰서 개찰 후에 검토하고 제5조에 따른 입찰의 성립여부 판단 2.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입찰이 성립된 경우 유효한 입찰 가운데 제7조(낙찰의 방법)에 따라 낙찰자 선정 ▶ 적격심사제 운영(지침 제13조 및 별표 5,6) 1. 평가주체는 5인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평가위원을 추가할 수 있음)으로 구성되었는가? |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낙찰자:) |

| ▶ 선정결과 공개(지침 제11조) | |
|---|---------|
| 1. 입주자대표회의는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리주체 에게 <mark>즉시 통지</mark> | 예□ 아니오□ |
| 1-1. 입찰공고 내용 | 예□ 아니오□ |
| 1-2. 사업자의 상호·주소·대표자 및 연락처 | 예□ 아니오□ |
| 1-3. 계약금액 | 예□ 아니오□ |
| 1-4. 계약기간 | 예□ 아니오□ |
| 1-5. 적격심사인 경우 그 평가결과 | 예□ 아니오□ |
| 2. 관리주체는 낙찰자의 결정일의 다음날 18시까지 아래의 방법으로 위1에 대하여 공개 | 예□ 아니오□ |
| 2-1. 인터넷 홈페이지 | 예□ 아니오□ |
| 2-2. 동별 게시판 | 예□ 아니오□ |
| 2-3.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예□ 아니오□ |
| 계약 | |
| ▶ 계약체결(법 제28조, 지침 제29조 및 제31조) | |
| 계약은 관리주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체결 | 예□ 아니오□ |
| 1.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하게 체결했는가? | 예□ 아니오□ |
| 2. 계약보증금을 받았는가? | 예□ 아니오□ |
| 3. 공동주택에서 상시 근무가 필요한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4대보험(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서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수취 | 예□ 아니오□ |
| 4.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방법으로 공개 | 예□ 아니오□ |
| 4-1. 인터넷 홈페이지 | 예□ 아니오□ |
| 4-2. 동별 게시판 | 예□ 아니오□ |
| ▶ 입주자등의 채무부담발생 공사 금지(준칙 제62조의2) | |
|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 등에게 채무부담이 발생되는 공사인지 여부 | 예□ 아니오□ |

10.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체크리스트[수의]

| 확인할 사항 | 확인(∨) |
|--|---------|
| ▶ 수의계약의 대상(지침 별표2)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
| 1.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 예□ 아니오□ |
| 2.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 예□ 아니오□ |
| 2-1. 공산품 인지 여부 객관적으로 확인 | 예□ 아니오□ |
| 3. 분뇨의 수집·운반(정화조 청소 포함)과 같이 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수수료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 예□ 아니오□ |
| 3-1. 법령이나 자치법규명【해당 조문(항)】 : | |
| 4.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 예□ 아니오□ |
| 4-1.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 예□ 아니오□ |
| 4-2.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 예□ 아니오□ |
| 5. 본 공사와의 동질성 유지 | 예□ 아니오□ |
| 5-1. 또는 장래의 하자책임 명확성을 위하여 | 예□ 아니오□ |
| 5-2. 마감공사 | 예□ 아니오□ |
| 5-3. 또는 연장선상에 있는 추가 공사를 본 공사 금액의 10%이내에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 예□ 아니오□ |
| 6.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부가세 제외)이하인 경우로서 | 예□ 아니오□ |
| 6-1.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 예□ 아니오□ |
| 6-2.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 나 물량 으로 <mark>나누어(일명 쪼개기) 계약</mark> 여부 | 예□ 아니오□ |
| 7.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 예□ 아니오□ |
| 7-1. 이 경우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 변경여부 | 예□ 아니오□ |
| 8.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 7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 | 예□ 아니오□ |
| 8-1.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의결 | 예□ 아니오□ |
| 9. 그 밖에 천재지변, | 예□ 아니오□ |
| 9-1, 안전사고 발생 등 | 예□ 아니오□ |
| 9-2. 긴급한 경우로서 | 예□ 아니오□ |
| 9-3.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선조치 후보고 가능) | 예□ 아니오□ |

| ▶ 수의계약 전에 확인 할 사항(지침 제4조) | | |
|--|-----|------|
| 1. 계약상대자 선정 | 예□ | 아니오□ |
| 1-1. 계약상대자 : | | |
| 2. 계약조건 등 중요사항 확인 | 예□ | 아니오□ |
| 2-1. 계약조건 등 : | | |
| 3. 계약상대자와 계약조건 등 중요사항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여부 | 예□ | 아니오□ |
| ▶ 선정결과 공개(지침 제11조) | | |
| 1.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각 호의 사항을 통지 받거나 사업자 선정의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아래사항 확인 | 통지□ | 결정□ |
| 1-1. 사업자의 상호·주소·대표자 및 연락처 | 예□ | 아니오□ |
| 1-2. 계약금액 | 예□ | 아니오□ |
| 1-3. 계약기간 | 예□ | 아니오□ |
| 1-4. 수의계약인 경우 그 사유 | 예□ | 아니오□ |
| 2. 관리주체는 낙찰자의 결정일의 다음날 18시까지 아래의 방법으로 위 1에 대하여 공개 | 예□ | 아니오□ |
| 2-1. 인터넷 홈페이지 | 예□ | 아니오□ |
| 2-2. 동별 게시판 | 예□ | 아니오□ |
| 2-3.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예□ | 아니오□ |
| ▶ 계약체결(법 제28조, 지침 제29조 및 제31조) | | |
| 계약은 관리주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체결 | 예□ | 아니오□ |
| 1. 의결내용과 동일하게 체결했는가? | 예□ | 아니오□ |
| 2. 계약보증금을 받았는가? | 예□ | 아니오□ |
| 3. 공동주택에서 상시 근무가 필요한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4대보험 (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서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수취 | 예□ | 아니오□ |
| 4.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방법으로 공개 | 예□ | 아니오□ |
| 4-1. 인터넷 홈페이지 | 예□ | 아니오□ |
| 4-2. 동별 게시판 | 예□ | 아니오□ |
| ▶ 입주자등의 채무부담발생 공사 금지(준칙 제62조의2) | | |
|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 등에게 채무부담이 발생되는 공사인지 여부 | 예□ | 아니오□ |

11. 장기수선계획 등 체크리스트

| 확인할 사항 | 확인[∨] |
|---|---------|
|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법 제29조, 영 제31조 및 규칙 제7조) | |
| 1.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필요시 조정)하였는가? | 예□ 아니오□ |
| 1-1. 관리주체가 조정안 을 작성 하고 | 예□ 아니오□ |
| 1-2.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 | 예□ 아니오□ |
| 2.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 하거나 보수 하였 는가? | 예□ 아니오□ |
| 3.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mark>기록</mark> 하고 보관 하였는가? | 기록□ 보관□ |
| 4.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3년이 지나기 전 장기수선계획 조정이 <mark>필요</mark> 한가? | 예□ 아니오□ |
| 4-1. 조정이 필요시 전체 입주자 과반수 의 서면동의 를 받았는가? | 예□ 아니오□ |
|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법제30조,영제31조 및 준칙제62조,제66조) | |
| 1.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 하였는가? | 예□ 아니오□ |
| 2.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금액을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별로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하였는가? | 예□ 아니오□ |
| 3.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영 제31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였는가?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 예□ 아니오□ |
| 4. 장기수선충담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하고 있는 금액인가? | 예□ 아니오□ |
| 5.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준칙 별지 제6-1호 서식)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 하였는가? | 예□ 아니오□ |
| 5-1. 수선공사(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을 말함) | 예□ 아니오□ |
| 5-2.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 예□ 아니오□ |
| 5-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 예□ 아니오□ |
| 5-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 예□ 아니오□ |
| 5-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 예□ 아니오□ |
| 5-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 예□ 아니오□ |
| 6.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게획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을 받았는가? | 예□ 아니오□ |
| 7. 장기수선충담금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였는가? | 예□ 아니오□ |

| 8.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 가 있는 경우 | 예□ 아니오□ |
|--|--------------|
| 8-1.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 가능한 바, 각 호의 용도로 사용여부 | 예□ 아니오□ |
| ① 법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 예□ 아니오□ |
| ② 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 예□ 아니오□ |
| ③ 위 ①호 및 ②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 예□ 아니오□ |
| 9.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 했는지 여부 | 예□ 아니오□ |
| 10.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준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 말까지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mark>공개</mark> , 입주자등에게 배부 여부 | 홈페이지□게시판□배부□ |
| 10-1. 직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 예□ 아니오□ |
| 10-2.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 포함) 및 잔액 | 예□ 아니오□ |

12. 설계도서의 보관 등 체크리스트

| 확인할 사항 | 확인(∨) |
|---|---------|
| ▶ 설계도서의 보관 등(법 제31조,영 제32조 및 규칙 제10조) | |
|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 등을 기록·보관·유지 여부 | 예□ 아니오□ |
| 1.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인계받은 설계도서 및 장비의 명세 | 예□ 아니오□ |
|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 예□ 아니오□ |
| 3.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감리보고서 | 예□ 아니오□ |
| 4.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용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의 이력관리 관련 서류·도면 및 사진 | |
| 4-1.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관리 여부 | 예□ 아니오□ |
| 4.2. 다음 각 호의 서류 작성(기록) 및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등록 여부 | 예□ 아니오□ |
| 4-2-1. 이력 명세(시설별 이력관리) | 예□ 아니오□ |
| 4-2-2. 공사 전·후의 평면도 및 단면도 등 | 예□ 아니오□ |
| 4-2-3. 주요 공사 사진 | 예□ 아니오□ |

13. 안전관리계획 등 체크리스트

| 확인할 사항 | 확인(∨) |
|--|---------|
| ▶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등(법제32조, 영제33조 및 규칙제11조) | |
| ○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 예□ 아니오□ |
| 1.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 예□ 아니오□ |
|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 예□ 아니오□ |
| 3. 발전 및 변전시설 | 예□ 아니오□ |
| 4. 위험물 저장시설 | 예□ 아니오□ |
| 5. 소방시설 | 예□ 아니오□ |
| 6. 승강기 및 인양기 | 예□ 아니오□ |
| 7. 석축, 옹벽, 담장, 맨홀, 정화조 및 하수도 | 예□ 아니오□ |
| 8.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 예□ 아니오□ |
| 9.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 예□ 아니오□ |
| 10. 펌프실, 전기실 및 기계실 | 예□ 아니오□ |
| 11. 주차장, 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 예□ 아니오□ |
| ○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 예□ 아니오□ |
| ○ 안전관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 포함 여부 | 예□ 아니오□ |
| 1. 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 | 예□ 아니오□ |
| 2.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 예□ 아니오□ |
| 2-1. 해빙기 진단 | 예□ 아니오□ |
| 2-2. 우기진단 | 예□ 아니오□ |
| 2-3. 월동기진단 | 예□ 아니오□ |
| 2-4. 안전진단 | 예□ 아니오□ |
|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 예□ 아니오□ |
| 4.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예□ 아니오□ |
| 5. 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예□ 아니오□ |
| ○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행 여부 | 예□ 아니오□ |
| ▶ 안전점검(법 제33조 및 영 제34조) | |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반기별 안전점검 실시 여부 | |
|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15층 이하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영 제34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가 안전점검 실시) | 예□ 아니오□ |
| 1.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예□ 아니오□ |
|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C등급,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예□ 아니오□ |

14. 하자보수 등 체크리스트

| 확인할 사항 | 확인[∨] |
|--|-----------|
| ▶ 하자보수 등(법 제38조, 영 제43조 및 규칙 제18조) | |
| ○ 하자보수보증금 각 호의 용도로 사용 여부 | |
|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송달된 하자 여부 및 여부 판정서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 예□ 아니오□ |
| 2.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 예□ 아니오□ |
| 3.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 예□ 아니오□ |
| 4.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하자진단의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 예□ 아니오□ |
| 5. 장기수선충당금으로의 적립 여부(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이 불가함) | 예□ 아니오□ |
|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다음 각 호의 서류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 여부 | 예□ 아니오□ |
| 1.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융기관 거래명세표(입·출금 명세 전부가 기재된 것) | 예□ 아니오□ |
| 2. 하자보수보증금의 세부 사용명세 | 예□ 아니오□ |
| ▶ 하자보수 청구 서류 등의 보관(법제38조의2, 영제45조의2~3) | |
| 하자보수 이력, 담보책임기간 준수 여부 등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보관 여부 | |
| 1. 하자보수청구 내용이 적힌 서류 | 예□ 아니오□ |
| 2.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내용이 적힌 서류 | 예□ 아니오□ |
| 3.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및 사용 내용이 적힌 서류 | 예□ 아니오□ |
| 4.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거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받은 서류 | 예□ 아니오□ |
| 5. 그 밖에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 대행을 위하여 관리주체가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 예□ 아니오□ |
| 6. 상기 서류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 | 문서□ 전자문서□ |
| 6-1. 그 내용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 여부 | 예□ 아니오□ |
| 6-2. 관리주체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한 날부터 10년간 보관 | 예□ 아니오□ |
| 7.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제공을 요구 시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 제공 여부 | 예□ 아니오□ |
| 8. 관리주체 변경 시 기존 관리주체가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서류 등을 인계 여부 | 예□ 아니오□ |

| ▶ 담보책임의 종료(영 제39조) | |
|---|---------|
| ○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입주자대표 회의에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 시 | |
| 1. 입주자대표회의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예□ 아니오□ |
| 1-1. 전유부분에 대한 조치 :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하자보수를 청구하도록 입주자에게 개별통지 하고 공동주택 단지안의 잘보이는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 | 통지□ 게시□ |
| 1-2. 공용부분에 대한 조치 :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하자보수 청구 | 예□ 아니오□ |
| ○ 사업주체가 보수결과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 시 (하자가 아닐시 그 이유 명확히 기재) | |
| 1. 이의제기 여부 (입주자대표회의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유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 | 예□ 아니오□ |
| 사업주체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작성 여부 | 예□ 아니오□ |
| 1-1. 전유부분 : 입주자 | 예□ 아니오□ |
| 1-2. 공용부분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5분의4이상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만 해당) | 예□ 아니오□ |
|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쳤는지 여부 | 예□ 아니오□ |
| 1. 의견청취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개별통지 하고 공동주택단지 안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 | 예□ 아니오□ |
| 1-1.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사실 | 예□ 아니오□ |
| 1-2. 완료된 하자보수의 내용 | 예□ 아니오□ |
| 1-3. 담보책임 종료확인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의견 제출기간 및 의견제출서 | 예□ 아니오□ |
|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전체 입주자의 5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반대시 의결 불가) | 예□ 아니오□ |
| ▶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영 제44조) | |
| 1.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하자보수 사업자 선정여부 | 예□ 아니오□ |
| 2.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용명세 사업주체에 통보 여부 | 예□ 아니오□ |

15.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등 체크리스트

| 확인할 사항 | 확인[V] |
|---|---------|
| ▶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준칙 제39조) | |
| 1.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하여 10인 이상 으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여부 | 예□ 아니오□ |
| 2. 제출된 별지 제5-1호 서식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변경)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 하였는가? | 예□ 아니오□ |
| 3.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정산 (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을 지원했는지 여부 | 예□ 아니오□ |
| 3-1.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부터 적격 지출증빙서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 받았는지 여부 | 예□ 아니오□ |
| 4.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의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구성 신고한 날부터 3 0일 이내 해당 공동체 활성화 단체 및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지 여부 | 예□ 아니오□ |
| ▶ 소요비용의 지원(법 제21조, 준칙 제42조 및 제63조) | |
| 1. 비용 지원을 받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부터 분기별로 사업실적 및 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았는가? | 예□ 아니오□ |
| 1-1. 해당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하였는가? | 예□ 아니오□ |
| 1-2. 해당 비용을 유용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비용의 지원을 중단하고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부터 이에 대한 비용을 반납 받았는가? | 예□ 아니오□ |
| 2. 제출받은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 예□ 아니오□ |
| 2-1.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여부 | 예□ 아니오□ |
| 2-2. 관리비부과명세서 배부 시 기재 또는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에게 알렸는가? | 예□ 아니오□ |
| 3.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지원 비용을 정산하고 그 잔액을 반납 받았는가? | 예□ 아니오□ |
| 4. 관리규약에서 정한 지원한도 범위 내 지원여부 | 예□ 아니오□ |
| 4-1. 공동체 활성화 단체 지원비용 : 연간만원 | 예□ 아니오□ |
| 5. 경비의 지원을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동 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하였는가? | 예□ 아니오□ |

16.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등 체크리스트

| 확인할 사항 | 확인[∨] |
|---|---------|
| ▶ 관리주체의 업무 등(법 제63조 규칙 제29조 및 준칙 제51조) | |
|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 예□ 아니오□ |
|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 예□ 아니오□ |
|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 | 예□ 아니오□ |
|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 예□ 아니오□ |
|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 예□ 아니오□ |
| 5.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 예□ 아니오□ |
| 6.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몽 | 예□ 아니오□ |
| 7.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 예□ 아니오□ |
| 8.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 예□ 아니오□ |
| 9.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하자보수청구 등의 대행 | 예□ 아니오□ |
| 10.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용역 감독 및 준공검사 | 예□ 아니오□ |
| 11. 재해보험의 가입 | 예□ 아니오□ |
| 12.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및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 | 예□ 아니오□ |
| 13. 관리규약 위반자 및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 예□ 아니오□ |
| 14.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해석에 관한 자문 | 예□ 아니오□ |
| 15. 입주자등의 제안, 질의, 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결과 회신(7일 이내) | 예□ 아니오□ |
| 16.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주자등의 제안, 질의, 민원사항 처리결과 보고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 예□ 아니오□ |
| 17. 그 밖에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 | 예□ 아니오□ |
|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법 제64조, 영 제69조 및 규칙 제30조) | |
| 관리사무소장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가? | 예□ 아니오□ |
|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 예□ 아니오□ |
| 1-1.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 예□ 아니오□ |
| 1-2. 위 1-1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 예□ 아니오□ |
|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 | 예□ 아니오□ |

| 3.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총괄 | 예□ 아니오□ |
|--|---------|
| 4. 법 제63조제1항 각 호 및 시행규칙 제29조 각 호의 업무를 지휘·총괄 하는 업무 | 예□ 아니오□ |
| 5. 입주자대표회의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 | 예□ 아니오□ |
| 6.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 가능 | 예□ 아니오□ |
| ▶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준칙 제51조의2) | |
| 관리주체가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검침 여부 | 예□ 아니오□ |
| ▶ 충간소음 및 간접흡연의 방지 등 (법 제20조, 20조의2 및 준칙 제55조~55조의5) | |
|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중단요청, 차음조치 및 게시판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했는가? | 예□ 아니오□ |
| 2.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한 자치적인 조직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여부 | 예□ 아니오□ |
| 2-1.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잡수입에서 지출여부 | 예□ 아니오□ |
| 3.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한 자치적인 조직 구성·운영 여부 | 예□ 아니오□ |